## (사)대한화장품협회

KOREA COSMETIC ASSOCIATION

직인생략

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, 907(금산빌딩) /전화\*02-2135-5771 /팩스\*02-782-6659 담당부서 : 경영지원팀 부서장 : 임종근 부장 담당자 : 이지연 차장 e-mail: junetenth@kcia.or.kr

대한장협: 제5-142호

시행일자: 2022.05.24.

수신자 화장품 제조업자, 책임판매업자,

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대표이사

참 조

제 목: 식품의약품안전처,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및 과태료 부과 안내

- 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-3543호(2022.5.19.) 관련입니다.
- 3. 최근 화장품 법령의 개정·시행(2022.02.18.)으로 2023년부터 책임판매 관리자 등의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(50만원)가 부과됨에 따라, 이를 안내 하오니 붙임의 교육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여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\* 과태료관련 근거:

화장품법 제5조(영업자의 의무 등)제7항, 제8항, 제40조(과태료) 제1항제4호, 제4의2호 화장품법 시행령 제16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[별표2] 개별기준 마목, 바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(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) 제1항, 제2항

붙임: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및 과태료 부과 안내 1부. 끝.

## (사)대한화장품협회장